

알아두면 편리한 1993년도 한육우관련 금융제도 및 보조사업

김 경 래 (본회 기획차장)

우리협회에서는 한육우 생산농가의 경제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93년 올해 한육우산업에 관련된 금융제도와 보조사업을 취합해 상세히 기술합니다.

한육우 생산농가 여러분의 자금상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바라며 이에 관련 문의사항은 협회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1. 양축자금

가. 대출용도

사료구입비, 동물약품구입비 등 가축사양에 소요되는 자금

나. 대출대상

가축사육 여건을 갖춘 양축농가

다. 대출조건

자금의종류	이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대출한도	적요
양축자금	년5%	1년 이내	-	800만원 이내	하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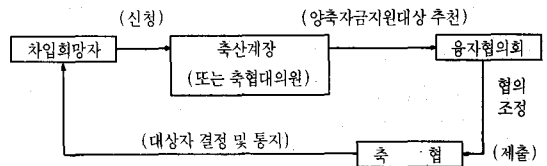
1) 이자징수는 상환일에 후취

2) 대출금 상환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1년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3)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은 담보대출(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포함)로 함.

라. 자금차입 수속절차

1) 양축자금 차입 희망자는 양축두수, 육자요청액,



자금사용용도, 신청일, 신청인주소 성명을 기재한 양축자금 육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축산계장(축산계가 없는 곳은 축협 대의원)에 신청한다.

2) 축산계장은 축협조합원 여부에 불구하고 조합의 자금배정 범위내에서 양축가별 양축규모와 자금사정, 그 동안 양축자금지원 여부를 감안 「육자협의회」에서 지원 순서와 지원액을 협의 조정하여 양축자금 지원대상 추천서를 작성, 대출조합에 제출한다.

* 육자협의회 구성 : 축협조합장이 각 구역별로 위촉하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 읍·면·동의 축산담당공무원 1인, 축산후계자 대표 1인, 일반양축가 대표 2인

* 축산계가 조직되지 아니한 지역은 축협대의원선거 규정에 의한 선거구별로 대의원이 추천함.

3) 축협조합장은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이 「융자협의회」를 거쳐 추천한 농가중에서 대출한다.

4)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축협간행물 또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추천자와 대상농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기 타

- 1) 대출금은 출자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제하지 못하며, 본인에게 직접 지급
- 2)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는 추천한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에 통보

2. 한우단지, 목장 및 영농조합법인 등 협업체 육성시범 사업 자금

가. 대출용도

한우 사육농가 및 한우산업 기반 유지
한우사육에 적합한입지와 유능한 경영주체의 확보.

나. 대출대상

1) 한우사육농가

- 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하는 자
- 초지, 사료포 등 조사료 생산 기반을 성우 두당 0.1헥타이상 확보, 운동장은 번식우는 두당 3평이상 비육우는 2평이상 확보

-55세 이하로서 5년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자, 다만, 56세 이상일 경우 자녀가 같이 전업에 종사할 경우 가능

2) 한우단지

- 입지조건이 좋은 단지 우선
- 과거 5년간 비육우 30두, 번식우 5두이상 평균적으로 사육한 경험자가 2인 이상 일 것
- 단지가 실질적으로 공동투자에 의해 조성될 것.
- 번식우 비율이 높은 단지 우선
- 이미 소 두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단지 및 충분한 소 구입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단지 우선

3) 한우농가 영농조합법인 등 협업체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한 법인.

-협업체는 동일 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상법에 의한 회사 설립등기를 하였거나 5인이상의 농가가 회칙(운영규정)등을 규정하고 운영하는 모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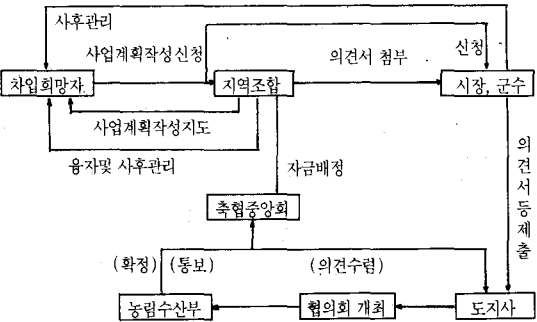
다. 대출조건

자금의 종류	이율	거치기간	상환기간	대출한도		적요
				개인	단체	
시설장비	년5%	3년	7년	2억원		하단참조
환경보전장비	년3%					

1) 법인은 자본의 200%, 축협 등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00% 이내

2) 축산진흥기금을 이미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기차입액을 차감한 차액에 한하여 대출

라. 자금차입 수속절차



1) 차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축협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신청+축협은 사업계획작성을 사전 지도

2)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대상자 구비요건의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 제출

3) 도지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 제출

4) 농림수산부는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 해당도와 축협중앙회에 통보

5) 축협은 사업추진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용자, 지원

다. 지원기준

내역	보조비율 (%)		융자비율 (%)	적요
	기금	지방비		
기반시설 (전력, 용수, 도로) * 개인목장	70	20		
사육시설장비 (축사, 창고 등)	50	20	20	
초지조성, 기존초지 보완	50		70	
사료작물재배 (종자재) (비료대)	80	20	50	
볏짚암모니아처리	50			
사료작물 저장용 싸이로 시설	80			
조사료 생산장비	50		50	
	30	20	40	
	10	20	60	
조사료용 볏짚수거기 보급	50		40	
정화시설			100	
간이정화시설	30		70	
분뇨운반장비	50		20	
	30		40	
수송차량 (생축 및 고기운반용)			70%	
한우고기 전문판매장 개설			70%	

3. 조합특화사업자금(단체)

가. 대출용도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축산관련 사업

나. 대출대상

축협조합(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사업내용이 지역 특색에 맞고 국제경쟁력 제고와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을 우선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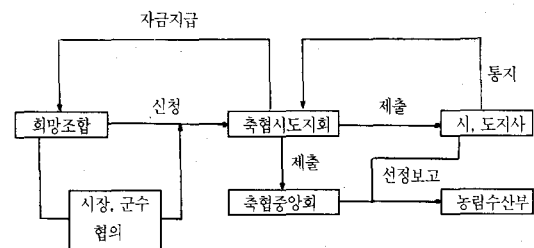
- 지역 양축가의 공동이익 사업 추진 조합
- 조합자체 고유상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조합

다. 대출조건

자금의종류	이율	거치기간	상환기간	대출한도	적요
조합특화사업	년 3%	3년	7년	20개소 총60억원	하단 참조

1) 총사업비의 70%이내 융자(이미 축산진흥기금을 차입한 축협은 기융자 잔액을 포함하여 자기자본의 400% 한도내에서 융자)

라. 대상조합선정 절차



1) 희망조합은 사업에 대하여 관할시장, 군수와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계획(사업목적, 내용, 규모, 사업장(시설) 확보 및 활용계획, 원료조달계획, 축산물생산 및 판매계획, 재원조달계획, 자금상환계획, 연도별 손익추정 등 포함)을 수립하여 시, 도지회에 신청

2) 축협 시, 도지회장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할 시, 도지사 및 축협중앙회에 제출

3) 축협중앙회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조합을 책임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시, 도지사 및 농림수산부에 보고

4. 축사시설개선자금

가. 대출용도

시설자동화, 축사환경개선(자동급여 급수시설, 환기, 착유시설, 사료저장시설, 분뇨수거 및 처리시설, 축사신축 및 기존축사 개축 증축)

나. 대출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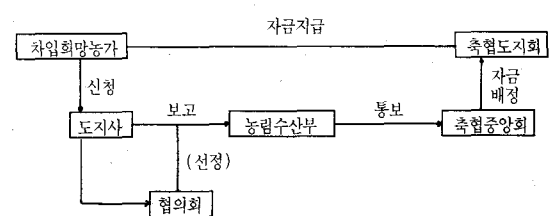
소 100두 이하 사육농가. 단, 이미 지원한 농가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다. 대출조건

자금의종류	이율	거치기간	상환기간	대출한도	적요
축사시설개선	년 5%	3년	7년	3천5백만원이내	하단 참조

1) 총사업비의 70%이내 축산진흥기금 또는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라. 자금차입 수속절차



1) 차입희망농가는 도지사에 축사시설개선자금을 신청

2) 도지사는 축협, 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양축농민들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 최종대상자 심의 선정

3) 도지사는 선정 결과를 농림수산부에 보고

4) 농림수산부는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을 확정하여

축협중앙회에 통보

- 5) 축협중앙회는 해당 축협도지회에 자금 배정
- 6) 축협도지회는 사업 기성고에 따라 자금 지급

5. 축산기계화 사업자금

가. 대출용도

축산기계 구입자금

나. 대출대상

축산기계, 기구의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

다. 대출조건

자금의종류	이율	거치기간	상환기간	용자비율
축산기계화	년 5%	2년	3년	기종별 구입자금의 70% 이내

라. 자금차입 수속절차

* 축협중앙회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

6.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자금

('93. 3. 15일자로 신청완료된 사업이나 '94년 이후에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가. 대출용도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나. 대출대상

축협

축산물생산관련협회(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등)

한우생산협업체(초우회, 한우안동비육회, 강진맥우작목반 등)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일반식육 판매업소.

한국냉장(주)

(주) 한국축산유통

○ 지원내역

구	분	사업량	용자단가
축협중앙회		8 개소	6 억원
축협조합(업종, 지역)		20	3
한국냉장(주)		3	5
(주) 한국축산유통		3	5
축산기업조합		20	1
한국수퍼체인협회(코스카상역(주))		36	2
기 타		10	2

다. 대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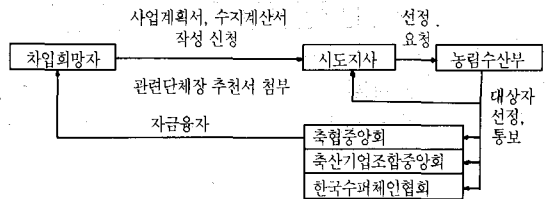
용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이 율 : 축협, 한냉 년 3%

협업체 년 5%

민간 년 8%

라. 자금차입 수속절차



1) 차입희망자는 원료육구입 및 판매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수지계산서를 작성(관련단체장의 추천서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93. 3. 15까지)

2) 시도지사는 신청자의 사업성과 원료육 구입계획 등을 검토한 후 농림수산부에 대상자 선정 요청

3) 농림수산부는 시도지사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관련단체장에 통보

4) 축협중앙회는 자금용자

7. 한우 유통 활성화 자금(조합)

가. 대출용도

한우 유통 활성화

나. 대출대상

지역조합

- 한우개량단지 보유조합

- 고급육생산 단지 보유 조합

- 한우대량 사육조합

- 기타 희망조합

다. 대출조건

자금의종류	이율	거치기간	상환기간	용자기준
한우유통활성화	무이자	-	1년	두당 3백2만5천원

라. 자금차입 수속절차

* 축협중앙회가 시도지사에게 사전협의하여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 보고

8. 계통출하 장비지원 자금

가. 대출용도

한우 수송차량 구입지원(2.5~4.5톤)

나. 대출대상

지역조합(한우유통 활성화자금 지원조합 우선)

다. 대출조건

자금의종류	이율	거치기간	상환기간	용자비율
계통출하장비	년3%	2년	3년	구입자금의 70%

라. 자금차입 수속절차

* 축협중앙회가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 보고

9. 신규규조치 조성사업 자금

가. 대출용도

산지, 유희농지 초지조성

나. 대출대상

1) 초지조성 대상지를 확보한 실수요자

- 도시근교목장을 산지로 이전하거나 기성초지를 확대하려는 농가

- 축사등 부대시설과 가축입식 등 초지이용을 위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로서 초지를 성실히 관리, 이용할 수 있는자.

2) 대상지 선정

- 초지법 규정에 의한 초지적지 조사에 의거 1헥타 이상의 초지조성지구고시 및 초지조성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타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지 않는 지역

다. 대출조건

자금의종류	이율	거치기간	상환기간	대출한도	적요
신규초지조성	년5%	3년	7년	소요액의 50%내	하단 참조

1) 총사업비의 50% 용자, 국비보조 20%, 축진기금보조 30%

2) 1헥타당 1,830천원

10. 기성초지 보완사업 자금

가. 대출용도

기존초지 보완사업

유희초지 대리 관리자 지정

나. 대출대상

우선순위

- 1순위 : 초지법규정에 대리관리자 지정을 받은 농가의 초지보완

- 2순위 : 부락 공동방목장의 초지보완

- 3순위 : 한우고급육 생산기지로 지정된 축협초지보완

- 4순위 : 5헥타 미만의 영세양축농가의 하급초지보완

- 5순위 : 기타 자금지원이 필요한 초지의 보완

다. 대출조건

자금의종류	이율	거치기간	상환기간	대출한도	적요
기성초지보완	년5%	3년	7년	소요액의 50%내	하단 참조

1) 총사업비의 50% 용자, 축진기금보조 50%

2) 1헥타당 700천원

11.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지원자금(보조)

가. 자금보조용도

겨울철 유희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이용
사료작물 재배 자재대(종자, 비료)

나. 자금 보조대상

초지 등 조사료 생산기반이 미약한 소 사육농가

다. 지원조건

자금의종류	1헥타당 지원액	지 원 비 율(%)				계
		국비	지방비	축진기금보조	자부담	
사료작물재배 종자대	78,500원	20	20	60	-	100
비료대	198,000원	-	-	50	50	100

1) 총사업비의 50% 용자, 축진기금보조 50%

2) 1헥타당 700천원

12. 조사료 생산기반 개선자금

가. 자금보조용도

토지기반정비

용수개발

목장도로개설

나. 자금보조대상

1) 사업비중 20%의 지방비와 10%의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전업규모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당해 지역에서 토지구모에 적정한 소사육업을 10년이상 계속할 수 있는 농가

3) 타농가의 시범효과가 크게 기대될 수 있는 지역

4)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의 피해나 타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

5) 정부지원에 의한 관광목장이나 젓소육성우 목장 조성계획이 확정된 지역으로써 당해 사업비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한 경우

다. 지원조건

자금의 종류	지원 단가		지 원 비 율 (%)				계
	기준	단가	국비	지방비	축진기금보조	자부담	
조사료생산기반개선							
토 지 기 반 정 비	1헥타당	5,000원	-	20	70	10	100
비 료 대	1헥타당	9,700원	-	20	70	10	100
목 장 도 로 개 설	키로당	10만원	-	20	70	10	100

13. 관광목장 조성자금

(* '93. 3. 10까지 선정완료된 사업이나 '94년 이후에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가. 대출용도

초지를 이용한 관광목장 조성

나. 대출대상

지역축협, 업종조합 또는 농가

1) 대상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예산을 확보하여 관광목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 우선

-1개지구당 20헥타내외의 초지확보가 가능(신규 초지조성 또는 기성초지활용) 한 지역

-주변지역의 경관이 수려하거나 인근에 관광휴양지 또는 문화유적지 등이 있어 관광휴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산과 관광을 겸한 소득증대 효과가 큰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환경보전법, 산림법, 숙박 및 요식업법 등 관광시설 사업추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 지역

2) 개발유형별

-가족단위 주말목장형

-산간지역형

-휴양형

-청소년심신수련형

-아동학습목장형

-스포츠 레저형 등

3) 축종 및 규모

-젓소 또는 한우 40두 내외(축종을 복합적으로 할 경우 소 위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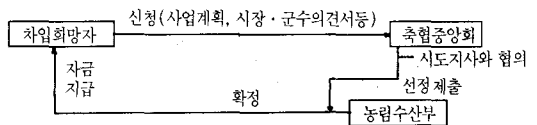
-초지 20헥타 내외(숙박시설, 회의장, 휴양운동시설 등 부대시설은 초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다. 대출조건

자금의 종류	이율	거치기간	상환기간	대 출 한 도	적 요
관광목장조성	년 5%	3년	7년	7억원 내외	하단 참조

1) 소요자금의 70%

라. 자금차입 수속절차



1) 차입희망자는 관광목장 조성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축협중앙회에 신청

2) 축협중앙회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에 선정자료 제출

3) 축협중앙회가 농림수산부와 협의하여 대상자 확정

14.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조성자금(보조및 융자)

가. 자금보조 및 융자용도

초지 및 사료재배지 단지화, 소사육농가 집단화

나. 자금보조 및 융자 대상

1) 대상지역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가 단지화 되고 전업규모 이상의 소사육농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조사료생산단지를 구성하여 농기계의 공동구입, 보관이 가능하고 전생산의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

-신규초지의 조성 또는 기성초지의 대리관리자 지

정 등에 의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유휴(한계) 농지를 활용하여 초지나 사료작물의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

2) 단지 및 사업규모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 50헥타 내외

-2~3개 부락외의 소사육농가 10~15호

-농기계구입(지원사업)

· 기본장비(동력원) : 중형트랙터 1대

· 부속작업기 : 사료작물재배, 수탁(이용), 운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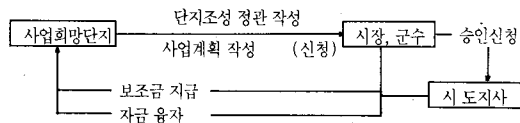
에 필요한 작업기 일체

· 농기계 보관 창고(자부담) : 50~60평 규모 1동

다. 보조 및 융자조건

자금의 종류	기준 단가	보조비율(50%)		융자(40%)			자담 비율(10%)
		지방비	가급보조	이율	거치기간	상환기간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조성	7천만원	20%	30%	년5%	3년	7년	10%

라. 보조 및 융자 수속절차



1) 사업희망단지는 단지조성위원회를 모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에 의한 단지구성 정관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 제출한다.

2) 시장군수는 도지사에 승인을 받는다.

15. 조사료 생산사업단 설치자금(단체)

가. 자금보조 및 융자용도

유휴농지, 초지 등을 이용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토지임차, 기계구입, 인건비, 창고시설 등

나. 자금보조 및 융자 대상

1) 대상지역

-젓소 및 한우 집단사육지역으로 조사료의 수요량이 많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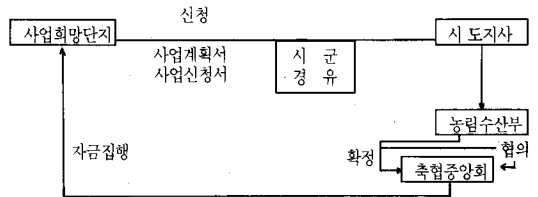
-농지임대 또는 위탁작업에 의한 조사료 생산 희망자가 많은 지역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작업 및 집단화가 가능하며 시범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지역

다. 보조 및 융자조건

자금의 종류	기준 단가	보조비율(50%)		융자(40%)			자담 비율(10%)
		추진자금 보조	이율	거치기간	상환기간		
조사료 생산 사업단 설치자금	4억원	50%	년3%	3년	5년	10%	

라. 보조 및 융자 수속절차



1)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조합장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지운영 정관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를 거쳐 시 도지사에게 선정한다.

2)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부에 제출한다.

3) 농림수산부는 축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4) 축협중앙회는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자금을 집행한다.

16. 사료용 볏짚 수거기 보급자금

가. 자금보조 및 융자용도

볏짚 수거 기계화

나. 자금보조 및 융자 대상

-지역축협, 업종조합, 축산계 등 단체 중에서 트랙터를 보유한 곳으로 볏짚을 수거하여 사료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단체

-트랙터를 보유한 양축농가로서 볏짚을 수거하여 자가용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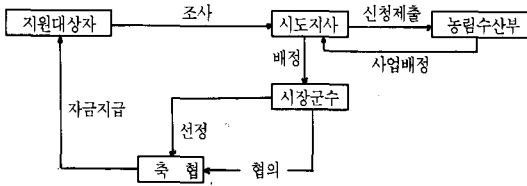
-기타 트랙터를 보유한 자가 볏짚을 수거하여 양축농가에 판매하고자 하는 자.

다. 보조 및 융자조건

자금의 종류	기준 단가	보조비율(50%)		융자(40%)			자담 비율(10%)
		추진자금 보조	이율	거치기간	상환기간		
사료용 볏짚수거기 보급	6백만원	50%	년5%	2년	3년	10%	

라. 보조 및 융자 수속절차

1)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농림수산부에 신청한다.



- 2) 농림수산부는 사업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시도별로 사업량을 배정한다.
- 3) 시도지사는 할당된 사업량을 시군별로 배정한다.
- 4) 시장군수는 축협과 협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5) 축협조합장은 시장군수의 사업확인에 의거하여 자금을 집행한다.

17. 벼짚(보리짚) 암모니아 처리 자금

가. 자금보조 및 용자 용도

벼짚(보리짚)의 암모니아 처리 사료화

나. 자금보조 및 용자 대상

한우 및 젃소 사육 농가

- 조사료 생산기반이 부족한 30두 규모의 소 사육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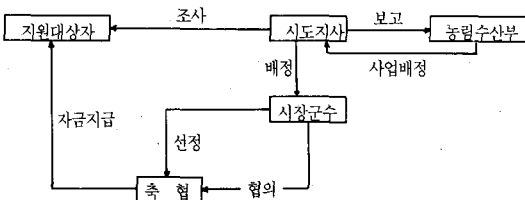
- 소요자재 중 벼짚과 비닐의 자가 확보가 가능한 양축농가

- 교통이 가급적 편리하고 소 사육이 단지화되어 있는 지역의 양축농가

다. 보조 및 용자 조건

자금의 종류	지원한도	보조비율(%)	자담비율(%)	적요
벼짚(보리짚) 암모니아처리사업	56만원	80%	20%	

라. 보조 및 용자 수속절차



- 1)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농림수산부에 신청한다.

2) 농림수산부는 사업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시도별로 사업량을 배정한다.

3) 시도지사는 할당된 사업량을 시군별로 배정한다.

4) 시장군수는 축협과 협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5) 축협조합장은 시장군수의 사업확인에 의거하여 자금을 집행한다.

18. 사료작물 저장용 싸일로 시설자금

가. 자금보조 및 용자용도

콘크리트 영구 싸일로 시설

나. 자금보조 및 용자대상

조사료 생산기반이 미약한 소 사육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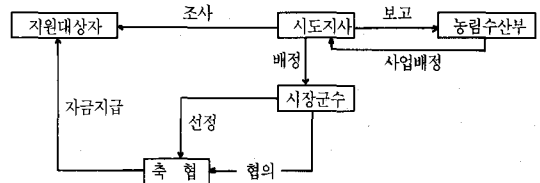
- 젃소 10두이상 한우 20두이상 사육농가중 사료작물 싸일로 시설이 없거나 간이 싸일로를 영구싸일로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

- 최소한 10년이상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농가

다. 보조 및 용자조건

자금의 종류	지원한도	보조비율(%)	용자 (50%)			적요
			이율	기차기간	상환기간	
사료저장용 싸일로시설자금	9백만원	50%	년5%	3년	7년	

라. 보조 및 용자 수속절차



1)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농림수산부에 신청한다.

2) 농림수산부는 사업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시도별로 사업량을 배정한다.

3) 시도지사는 할당된 사업량을 시군별로 배정한다.

4) 시장군수는 축협과 협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5) 축협조합장은 시장군수의 사업확인에 의거하여

자금을 집행한다.

19. 축산폐수처리 지원자금

가. 자금보조 및 용자용도

- 가축분뇨의 방류 방지
- 양축농가 및 정착촌 정화시설
- 가축분뇨의 자원화

나. 자금보조 및 용자대상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선정절차
간이정화시설	법규제 대상이하 영세 양축농가 -소 10두이상	현지조사(시군)→사업량보고(시도)→사업물량확정(농림수산부)→대상자확정(시도)
정화시설	법규제 대상농가중 신고 대상농가 -소사육시설 : 350-1,400㎡	상동
개별농가비료시설	법규제 대상 농가	상동
개별농가 퇴비처리장비 등	법규제 대상농가	상동
분뇨운반장비	-축협(지역, 업종), 영농조합 -낙농, 육우 단체 -기타 시장군수가 정한 등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한 20호 이상의 축산농가	현지조사(시도, 축협도지회)→사업량 및 대상자보고(시도)→사업물량 및 대상자 확정(농림수산부)

축분발효시설	-축협(지역, 업종), 영농조합	사업타당성검토(시군, 지역축협)→사업계획보고(시도, 축협도지회)→사업확정(농림수산부)
똥말제조시설 분뇨저장탱크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개인 -분뇨운반장비와 같은	상동 현지조사(시도, 축협도지회)→사업물량대상자보고(시도)→사업물량 및 대상자 확정(농림수산부)
정착촌 구조개선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정착촌 중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다발 지역	현지조사(시도, 한성협동회)→사업계획보고(시도)→사업확정(농림수산부)

다. 보조 및 용자조건

자금의 종류	용자용도	보조비율 (%)	용자조건			용자비율
			이율	지치기간	상환기간	
간이정화시설	2백1십만원	21%	년3%	3년	7년	49%
정화시설 1	1천만원	-	년3%	3년	7년	100%
정화시설 2	1천만원	-	년3%	3년	7년	100%
개별농가 비료시설	5천만원	-	년3%	3년	7년	50%
개별농가 퇴비처리장	1천만원	-	년3%	3년	7년	50%
분뇨운반장비	6백만원	50%	년3%	3년	7년	20%
축분발효시설	2억원	50%	년3%	3년	7년	20%
똥말제조시설	1억5천만원	-	년3%	3년	7년	50%
분뇨저장탱크	1천만원	50%	년3%	3년	7년	20%
정착촌구조개선		100%				-

라. 보조 및 용자 수속절차 : 나) 항 참조

알아봅시다

주요 외국의 유가공품 소비량과 가격

	1인당 유가공품 소비량			원유 및 유제품 가격						
	버터	치즈	탈지분유	환율 ('93. 3)	원유		유시유		탈지분유	
					현지가	환산가	현지가	환산가	현지가	환산가
미국	kg 2.0	12.6	1.2	798	0.27 \$	215	10당		2.12	1,692
캐나다	3.3	12.8	1.8	642	0.48 C\$	308			3.13	2,010
영국	3.3	8.5	1.2	1,152	0.18 £	207	0.27	313		
프랑스	8.3	23.2	5.8	143	1.81 Fr	259	5.43	776	14.01	2,003
독일	6.5	18.4	1.7	483	0.60 DM	290	1.30	628	3.88	1,874
덴마크	4.0	15.5	2.7	126	2.62 Cr	330	6.18	779		
네델란드	3.4	15.1	11.4	430	0.68 FL	292	1.34	576	4.65	2,000
스위스	6.2	15.1	4.4	521	1.04 SFr	542				
뉴질랜드	9.4	7.7	8.8	423	0.25 N\$	106	1.19	503		
호주	2.6	8.8	2.5	565	0.29 A\$	164			2.35	1,328
일본	1.9	3.1	4.9	6.74	89.5 ¥	603	202	1,361	552	3,720

(주) 유가공품의 원유환산은 버터 2.5, 치즈 10, 탈지분유 10으로 계산